

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고, []에는 √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	10일
신청인	상호(명칭)		사업자등록번호(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)		
	성명(대표자)		생년월일		
	주소	(전화번호:)			
사업장소재지		(전화번호:)			
준공검사 대상시설					
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		[] 허가 또는 [] 신고 제 호			
시설용량 (㎡/일)					
시공사	상호(대표자)		등록번호	제 호	
	사업장소재지	(전화번호:)			
시설설치 완료일		년 월 일			

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합격여부 통보서			
신청인 상호		사업장소재지	
준공검사 대상시설		허가 또는 신고번호	제 호

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(합격, 불합격) 하였으므로 이를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

유 의 사 항

- 1.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는 대상 및 시기는 배출시설·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때입니다.
- 2.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·처리시설을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.

처 리 절 차

